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43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7.

발 의 자:성일종·강선영·조 국

고동진 • 인요한 • 유용원

박덕흠 • 이헌승 • 송석준

이종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·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하고,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음.

그런데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 제한이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삭제하고, 기본계획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 삭제 등).

법률 제 호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중 "5년마다"를 "3년마다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	정	안	
제6조(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	<삭	제>			
물의 설치 제한 등) ① 특별시					
<u>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</u>					
<u>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</u>					
한다)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					
<u>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</u>					
<u>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·군</u>					
수・구청장"이라 한다)은 소음					
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					
소음대책지역 지정・고시 이후					
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					
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					
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					
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. 다만,					
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					
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					
<u>할 수 있다.</u>					
②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					
수・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					
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					
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					
<u>있다.</u>					
1. 시설물의 용도변경					

- 2.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
 ③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
 제한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제
 한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
 방부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) 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<u>5년마</u> 단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 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7조(소음대책지역 소음	방지
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	기본
계획의 수립) ①	
	3년마
<u>다</u>	
② ~ ④ (현행과 같음)	